

#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3월 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0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03월 17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(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)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

#### 나. 주요내용

가.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6조의2)

-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규정

나.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7조의2)

- 조사구역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을 규정

다.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10조의2)

-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규정

라.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11조의2)
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정비로
- 새로 추가되는 주요내용은

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**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**  
조사구역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  
및 **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**

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**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**  
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.

-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 
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”을 “「주차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공영주차장관리자(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주차장관리자가 상주(常駐)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
2.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
3.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
4.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

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

도록 설정한다.

2.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,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.
3.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·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.
4.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
5.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폭원”을 “너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#### 1. 노상주차장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

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#### 2. 노외주차장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제11조의2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
2. 지역특산물 판매장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(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
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소

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제12조 제4항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주차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----- -----.
<신 설>	제6조의2(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공영주차장관리자(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주차장관리자가 상주(常駐)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.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.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.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
<신 설>	제7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

	<p>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.</p> <p>2.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,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.</p> <p>3.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·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.</p> <p>4.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</p> <p>5.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
<p>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</p> <p>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,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른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</p> <p>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 너비,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</p> <p>-----</p>

④ (생략)	<p>--</p> <p>-----시행규칙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신설>	<p>제10조의2(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상주차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</li> <li>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</li> </ul> </li> <li>2. 노외주차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</li> </ul> </li> </ol>
<신설>	<p>제11조의2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</li> </ol>



	<p>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</p> <p>2. 지역특산물 판매장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 1]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(배출 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 정비업소</p> <p>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
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·③ (생략)</p> <p>④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.</p>	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·③ (생략)</p> <p>④ 시행규칙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</u></p>	<p>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</p>

2.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 
(행정리를 말한다) 및 해당  
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  
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로  
한다.